

브라운스톤 여월 입주자 모집공고문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관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브라운스톤 여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s://brownstone-yeowol.com>)과 홍보관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입장 시 사업주체에서 실시/제공하는 검역·방역절차 및 위생도구 착용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진행은 당첨자(계약자)만 입장이 원칙이며(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방문은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s://brownstone-yeowol.com>) 및 대표번호(☎1666-6335)를 통해 방문예약하며 홍보관 방문 가능 기간(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계약체결 기간 등)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홍보관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홍보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 ~ 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특별공급 신청을 홍보관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1666-6335)로 방문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기간에 한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사전 예약 후 홍보관 방문이 가능하며 세대별 평면영상(아이소) 및 조감도 영상 관람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시 아래의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VII 계약체결 안내」의 일정 안내에 따라 홍보관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홍보관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홍보관 내 분양 상담전화(☎1666-633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0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2.) 현재 부천시 거주자이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 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등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2021.12.02.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 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칙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칙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칙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칙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원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홍보관 방문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홍보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 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나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brownstone-yeowol.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 · 수도권(인천, 경기)·지방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등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제57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전매행위 제한 등에서 제외됩니다.
 -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당첨된 1주택 소유자 또는 1주택 이상 소유자는 분양권 전매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자 의심자로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사후) 및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 정	2022.12.12.(월)	2022.12.13.(화)	2022.12.14.(수)	2022.12.20.(화)	2022.12.21.(수) ~ 12.31(토)	2023.01.02.(월) ~01.04.(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홍보관(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홍보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88 SKV1센터 A동 207호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홍보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청약접수 시 각 은행 본지점의 운영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2.02.28.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지세 납부(「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를 분양계약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 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2021.01.01.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9항에 따라 분양 계약 체결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 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재개발과 - 17324호(2022.11.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9-28, 9-29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13층 3개동 총 142세대 중 일반분양 42세대
특별공급 24세대(일반[기관주천]특별공급 4세대, 다자녀가구 4세대, 신혼부부 9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m²)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 총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관 주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826	01	026.9500	26	26.9500	9.6155	36.5655	12.6289	49.1944	14.9437	4	1	-	-	-	1	2	2	-
		02	059.9500A	59A	59.9500	20.1263	80.0763	28.0931	108.1694	32.7282	17	2	2	3	1	2	10	7	2
		03	059.9300B	59B	59.9300	19.5113	79.4413	28.0836	107.5249	32.4707	9	-	1	3	-	1	5	4	1
		04	059.9600C	59C	59.9600	20.2788	80.2388	28.0977	108.3365	32.7936	12	1	1	3	1	1	7	5	1
합 계											42	4	4	9	2	5	24	18	4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음.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비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허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 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제곱미터(m²)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은 필로티를 제외한 1층 및 필로티가 있는 타입은 2층 세대를 배정하였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자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증도금(20%)		잔금 (70%)
									1차	2차	1회(10%)	2회(1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이내	2023.03.27	2023.07.27	입주 지정일
026.9500	26	4	101	11,12층	4	92,941,100	124,058,900	217,000,000	10,000,000	11,700,000	21,700,000	21,700,000	151,900,000
059.9500A	59A	17	103	5층 이상	9	207,725,500	277,274,500	485,000,000	10,000,000	38,500,000	48,500,000	48,500,000	339,500,000
				4층	3	205,648,245	274,501,755	480,150,000	10,000,000	38,015,000	48,015,000	48,015,000	336,105,000
				3층	3	201,493,735	268,956,265	470,450,000	10,000,000	37,045,000	47,045,000	47,045,000	329,315,000
				2층	2	197,339,225	263,410,775	460,750,000	10,000,000	36,075,000	46,075,000	46,075,000	322,525,000
059.9300B	59B	9	103	5층 이상	6	204,299,100	272,700,900	477,000,000	10,000,000	37,700,000	47,700,000	47,700,000	333,900,000
				4층	1	202,256,109	269,973,891	472,230,000	10,000,000	37,223,000	47,223,000	47,223,000	330,561,000
				3층	1	198,170,127	264,519,873	462,690,000	10,000,000	36,269,000	46,269,000	46,269,000	323,883,000
				2층	1	194,084,145	259,065,855	453,150,000	10,000,000	35,315,000	45,315,000	45,315,000	317,205,000
059.9600C	59C	12	101	5층 이상	9	204,727,400	273,272,600	478,000,000	10,000,000	37,800,000	47,800,000	47,800,000	334,600,000
				4층	1	202,680,126	270,539,874	473,220,000	10,000,000	37,322,000	47,322,000	47,322,000	331,254,000
				3층	1	198,585,578	265,074,422	463,660,000	10,000,000	36,366,000	46,366,000	46,366,000	324,562,000
				2층	1	194,491,030	259,608,970	454,100,000	10,000,000	35,410,000	45,410,000	45,410,000	317,870,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 시행령」제60조)

※ 상기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026.9500	059.9500A	059.9300B	059.9600C
약식표기	26	59A	59B	59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 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유상옵션)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총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면,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월 전 월 이자정산일까지로 합니다.
이하 "이자정산일"이라 한다)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입주 시 정산하기로 하며,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 이후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 해야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대출기관 미지정 또는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예정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26	59A	59B	59C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	-
	장애인(경기도)	-	1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	1	1	1
	서울 및 인천 거주자(50%)	-	1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3	3	3	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	1	2
생애최초 특별공급	1	2	1	1	5
합계	2	10	5	7	2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도니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p>※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p>※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 마감 이후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신청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청약신청자의 기재 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장 접수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14:00)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특별공급 신청자가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남부지방보훈청 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기도내에 경쟁시 부천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21.12.02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역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기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 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9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하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분양권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전매 요청을 접수합니다.]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 12. 02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1.12.02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내에 경쟁시 부천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21.12.02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2년 적용)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총족 (추첨제,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 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아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1. 군 복무중 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 복무 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 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 <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 <td>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조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임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거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경기도내에 경쟁시 부천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21.12.02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는 자녀를 말함) 또는 1인 가구
*(1인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 12. 02.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초과 ~ 160%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가구	160% 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 ※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지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head> <tbody> <tr> <td>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 <td></td><td>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 <td>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별표2

구 분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수도권(경기도)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p>※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p>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p>※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 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p>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점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담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의거 무주택세대원 신청 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제외) 되지만 부양가족 수 산정 시에는 주택 소유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내용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주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 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1년이상 계속 거주(21.12.02. 이전부터 계속거주)신청자가 부천시 1년 미만 및 기타 수도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홍보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홍보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홍보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가격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1.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됨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12.12(월) (청약홈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홍보관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홍보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88, SKV1센터 A207호)
일반공급	1순위	2022.12.13(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2.12.14(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홍보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홍보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 19로 인해 은행 영업 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홍보관 방문 청약 시 유의사항

※ 홍보관 방문 청약신청은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 접수 시 하단의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를 청약 유형별로 확인하시어 구비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미비 할 경우 청약신청이 제한 될 수 있으니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및 홍보관에 서류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일반 공급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p>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p> <table border="1"><thead><tr><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확인 방식</th></tr></thead><tbody><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td></tr></tbody></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12.20(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12.21(수)~2022.12.31(토) / 10:00~17:00 • 장소 : 당사 홍보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 88, SKV1센터 A207호 브라운스톤 여월 홍보관)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 2순위 당첨자 : 계약체결 서류 지참 <p>※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01.02(월)~2023.01.04(수) / 10:00~17:00 • 장소 : 당사 홍보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 88, SKV1센터 A207호) <p>※ 방문예약제 운영</p>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홍보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홍보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동·호수 배정 추첨 및 계약)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 선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전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 2022.12.20(화) ~ 2022.12.29.(목) (10 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p>※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 2022.12.20.(화)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기간	2022.12.21(수)~2022.12.31(토) / 10:00~17:00
제출방법	홍보관 방문접수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 88, SKV1센터 A207호 브라운스톤 여월 홍보관

■ 유의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제출은 홍보관 방문 접수 예정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2.)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준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홍보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 공급 예비 포함)

■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 안내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내용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input type="radio"/>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홍보관 내 비치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분 제외)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내용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생년월일/기록대조 종료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특별공급 신청서 및 확약서	본인	• 홍보관에 비치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 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조회 기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또는 25년 이상)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복무 기간 명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	• 홍보관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 산정 시,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사항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재혼 가정의 자녀(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홍보관에 비치(임신한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내용
	필수	추가(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표4.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홍보관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홍보관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내용
	필수	추가(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표4.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홍보관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동일 등본 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직계비속: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또는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발급용
	○	위임장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 홍보관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 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금년도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부자세 확정신고서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서상 금액 (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홍보관에 비치 ②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접수장소 - 세무서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를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주민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조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용(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수도권 : 1년
 - 수도권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 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안내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3. 01. 02(월) ~ 2023. 01. 04(수), 10:00 ~ 17: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 88, SKV1센터 A207호 브라운스톤 여월 홍보관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계약 시		<input type="radio"/>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input type="radio"/>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input type="radio"/>		계약금 입금증	-	• 홍보관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input type="radio"/>		인지세(전자수입인지) 입금증	-	• 홍보관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계약 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input type="radio"/>	위임장	-	• 홍보관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input type="radio"/>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295401-01-244268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 1001호 당첨자가 흥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1001흥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 본 건축물은 자금관리 대리사무 신탁사인 신영부동산신탁(주) 및 시행사(부천여월 엘에이치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와 공동시행사(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특별본부)간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해야합니다.
 -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자금관리 대리사무신탁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신영부동산신탁(주)는 본 사업의 자금관리 대리사무신탁사로서, 시행사로부터 위임받은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분양계약서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시행사(부천여월 엘에이치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와 공동시행사(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특별본부)에게 있습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근거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신탁사 신영부동산신탁(주)는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사업비 등의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 반환, 입점지연 등에 따른 제반 의무, 건축물의 하자 보수 의무는 분양계약서 및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신영부동산신탁(주)에서 관리하며,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중도금대출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납부한(할) 분양대금 총액을 시행자가 자금관리 대리사무신탁사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합니다.
 - 토지소유권이 시행사(부천여월 엘에이치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와 공동시행사(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특별본부)에서 자금관리 대리사무신탁사인 신영부동산신탁(주) 명의로 신탁등기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내에 홍보관 방문인원이 제한되오니 당첨자는 반드시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자격검증서류 미제출 및 계약기간 홍보관 방문을 예약하지 않은 당첨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는 홍보관 입장 전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절차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홍보관 내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진행 등의 시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당첨자로 전산관리됨) 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신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됩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시행사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및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공급대금의 20% 범위(중도금1회부터 중도금2회까지) 내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까지(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월 전 월 이자정산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자정산일"이라 한다) 중도금대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입주 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 전액을 잔금과 함께 입주자가 완납 해야함] 조건으로 용자 알선을 할 예정입니다.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 분양대행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 (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중도금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중도금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기간 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압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시 중도금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기관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까지(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월 전 월 이자정산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자정산일"이라 한다)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을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상기 아파트는 전체세대 발코니 확장설치는 필수사항(분양가에 포함된 금액)이며 기타 옵션은 선택사항입니다.
- 추가 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이며 추가품목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추가 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 및 납부계좌,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같은 타입의 주택형 이라고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크기 및 위치, 층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호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 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호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품목	옵션	수량	제조사	주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지정일)	
시스템 에어컨 (LG)	ALT1	1대	LG	26	1,800,000	180,000	1,620,000	거실
	ALT2	2대		59 [전타입]	3,900,000	390,000	3,510,000	거실+침실1
	ALT3	3대			4,900,000	490,000	4,410,000	거실+침실1+침실2
	ALT4	4대			6,100,000	610,000	5,490,000	거실+침실1+침실2+침실3

(2) 중문

(단위 : 원)

품목	옵션	주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지정일)	
현관 중문	일반형 - 수동	59A, 59C	1,300,000	130,000	1,170,000	
	고급형 - 자동	59A, 59C	2,300,000	230,000	2,070,000	
	스윙도어 - 수동	59B	1,400,000	140,000	1,260,000	

(3) 가전

(단위 : 원)

품목	제조사	주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지정일)	
인덕션 3구 쿡탑	LG	59 [전타입]	900,000	90,000	810,000	
광파오븐			550,000	55,000	495,000	
냉장고+김치냉장고 (키큰장 포함)	솔리드		6,300,000	630,000	5,670,000	
	메탈		5,500,000	550,000	4,950,000	
냉장고 (키큰장 미포함)	솔리드		3,700,000	370,000	3,330,000	
	메탈		3,200,000	320,000	2,880,000	
김치냉장고 (키큰장 포함)	솔리드		3,100,000	310,000	2,790,000	
	메탈		2,800,000	280,000	2,520,000	

(4) 기타

(단위 : 원)

품목	제조사	주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지정일)	
불박이장	59 [전타입]	2,100,000	210,000	1,890,000		
주방벽면 엔지니어드스톤		59A	600,000	60,000	540,000	
		59B, 59C	700,000	70,000	630,000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59 [전타입]	750,000	75,000	675,000		
스마트 복합환풍기		26	350,000	35,000	315,000	
		59 [전타입]	700,000	70,000	630,000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관련 유의사항

- 옵션 선택품목의 계약 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대금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판매 일정, 계약 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 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 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됨.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 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 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상대업종」에 비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되지 않습니다.(추가 선택품목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2항【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하여 소득공제 제외항목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7호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납부계좌	주식회사 하나은행	308-890023-88404	이수건설(주)

- 상기 계좌는 추가 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일괄적으로 승계 됩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통합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함.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주택형별 면적(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본 아파트 공사중 전쟁, 내란, 위력행사를 동반한 민원 및 노조시위,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험오시설의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도로에서 단지내로 연결되는 외부계단 및 램프는 본 공사 시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필요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의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공원, 녹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범위가 아닙니다.
- 단지 내·외부 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은 증감이 발생하여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본 공사 시행 중에 시공 등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개수 등 소화시설물의 기준은 관계법령 및 수리계산에 의해 본 공사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2021년 08월 30일 사업시행인가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는 주변인들에게 상시개방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계약자 및 입주자는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마감자재는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마감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마감재 리스트를 참조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급격한 가격의 상승,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 분양홍보물(카탈로그, 팜플렛, 홈페이지, 사이버 견본주택)상 제시된 세대 확장형 및 선택형을 제외한 발코니 각 공간별 확장 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모든 선택형 옵션(무상/유상)은 확장 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사이버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 단지 모형의 외벽마감 및 색채, 조경, 식재, 시설물, 주변환경 및 대지레벨, 보도선형, 시설물의 위치, 동간거리, 도로 폭, 식재, 주변 응벽높이, 방음벽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 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상이한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홍보관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 및 착공도서를 반드시 열람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소규모주택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부천시조례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일반분양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사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 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동부분의 면적(계단실, 코아,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은 전용면적 비율로 계산되어 분배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주거 공용부분(각 층의 공용 흘, 복도, 세대 전실 등)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불법구조 변경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 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하부 PIT높이 및 비내력벽의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코너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 배치로 향별, 동별, 층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가 설치되며, 「도시가스공급규정」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

- 물의 위치, 조경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레벨차에 따른 용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용벽 및 조경석 구간의 계획안이 일부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외벽, 측벽, 필로티(캐노피 등), 부대복리시설,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D-A 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문주, 옹벽, 주차장램프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부색채는 시공사의 색채 기준 변경,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 분진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벽과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태양광판넬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는 조명 및 빛의 산란 등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용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부 출입구 및 동 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태(외관, 평면) 등이 동별로 크기, 방식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공용부분(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용홀 계단실의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 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 가압을 위해 자동으로 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소방도로, 보행 도로변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소방도로, 보행 도로변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결로는 생활습관에 따라 커질 수 있으므로 확장 및 비확장 공간 등을 입주자 스스로 주기적인 실내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드레스룸, 펜트리(84TYPE 현관 펜트리 제외), 욕실(샤워부스 및 욕조설치면 제외)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별도 난방 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 통합제어가 설치됩니다.
- IoT(사물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oT(사물인터넷) 서비스는 LG U+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3년 무상 이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oT(사물인터넷)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해당 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IoT(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필로티 내 제연henル 또는 그릴창이 설치되는 경우, 인접한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분진, 악취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경우, 주행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henル, D-A)은 건물에 매립되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가 인접한 일부 세대의 침실 및 최상층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 및 방향은 동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도로 및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단지 내 차로는 비상용 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입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통행로 등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시설 위치, 자연석 쌓기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설계도면과 달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아파트 주/부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 세대의 경우 입주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이후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은 불가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른 내진등급이 적용됩니다.
- 쓰레기집적장 설치 위치에 따라 동호수별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쓰레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소음,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생활피해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상층 출입이 상이하므로 분양홍보판에 비치된 설계도면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부출입구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에 따라 변경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외부 엘리베이터, 장애자 램프 등의 배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접 세대의 경우 차량에 의한 소음, 전조등, 자동차 배기ガ스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식은 법적기준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방습벽은 벽체배수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균린생활시설관련 관리사무소, 기계전기실, 용원실 등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에 설치된 시설을 함께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가 설치되며 정화조 배기탑은 101동 최상층으로 배기되며 이에 따른 거주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인입을 위한 전주, 맨홀 신설로 인해 미관 및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변압기, 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매연, 진동으로 인해 생활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201호 및 103동 201호 세대는 문주 계획에 따라 일부 조망권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경로당,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정화조, 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리동, 각종 장식물, 조경시설,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균린생활시설 구성 및 건축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반비용은 「동법 제45조」에 의거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냉·난방 실외기가 설치될 경우, 근접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

- 균린생활시설 주차대수(지상) 2대, 아파트 주차대수 지상 44대 지하1층 98대 총 142대로 계획했으며, 별도의 물리적인 주차 구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지하2층은 공용주차장(마을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차통로 - 2.3m / 주차라인 - 2.1m
- 지하주차장 진입 시, 차량의 높이는 2.3m로 제한되며, 2.3m를 초과하는 탑차(택배운송 등)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반상태 및 인근 건축물과의 관계 등에 의해 계획안(주차장 증고, 주차동선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주차대수의 감소는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공용시설로 특정위치 사용에 따른 전용지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진행 시 확장형 주차비율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구조 형식상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하 동 출입구는 구조검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및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 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 '매수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대수 및 설치위치로 인하여 불편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반형 주차구획 너비 2.5m X 5.0m(확장형 2.6m X 5.2m)로 설치됩니다. 또한, 일부 주차는 확장형 또는 경형주차로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상 44대, 지하1층 98대, 총 142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출입구가 계획되어 주차장 이용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주차출입 및 지상, 지하 주차 가능여부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단지 내(지하2층)에는 주차 85면의 마을(공영)주차장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 지하 2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 시 별도의 주차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하 2층은 공영주차장으로 별도의 통로 및 승강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별도의 한전인입, 통신, 소방설비가 설치되며 단지내 미관, 소음,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을(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은 부천시가 하며, 운영비용은 부천시가 부담합니다.
- 입주예정자(입주자대표자회의)는 마을주차장 사업에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조합-LH 간 세부협약을 따릅니다.

■ 세대 공통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도어의 손끼임방지 의무화로 거실에 면한 도어에 시공되며, 본 공사 시 장치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상세는 사이버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손끼임방지 장치는 사용에 따라 접착면의 탈락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세대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에 시공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마감 두께에 따라 설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대칭형 타입의 경우, 분양홍보물의 일부 각 실(현관, 거실, 안방, 침실, 주방, 욕실,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 세대 배치, 코아 형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사용예정인 대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세대 내 계약자가 사용 또는 사용예정인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의 크기에 따라 돌출 정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 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세대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계약바랍니다.
- 현관 디딤석, 욕실절다이, 주방상판등의 석재는 자재의 특성상 디딤 폭, 무늬, 색깔, 나누기 등이 사이버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타일줄눈 위치 및 각 악세사리 위치는 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 후 체결 바랍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사이버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 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이 불가합니다.
- 주방 및 다용도실의 창호 위치는 수납가구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가구(장롱, 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카탈로그 및 기타 인쇄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문짝모서리 상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단자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사이버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계획으로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도기, 위생기구 및 수전 등 부착물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해 해당 일부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배선기기(스위치,Outlet 등), 통신단자함, 세대 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사이버 견본주택에 따르며, 본 공사 시 위치, 사양,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분합문을 제외한 외부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세대 현관 및 대피공간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루자재는 스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 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됩니다.
- 본 아파트는 세대 보일러에 의한 개별 바닥난방이 적용됩니다.
- 본 공사시 설치되는 전동빨래건조대의 경우 제한된 발코니 폭으로 인해 스테인리스 걸이봉 확장시 발코니 벽체와 간섭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실외기실

- 각 주택형별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이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민원 발생 시 보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 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우천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나 보일러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 낙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바닥 배수가 필요한 공간(욕상, 필로티, 욕실, 발코니 등)의 바닥 높낮이는 본 공사시 사이버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혹은 실외기실에는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냉매배관(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이 노출 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및 우천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천정에는 전열교환기 및 연결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은 필수사항으로 기본형 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난간의 높이, 새시의 설치 유/무, 형태, 재질 등은 같은 타입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동별, 층수, 향별 및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새시는 사업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새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대피소 및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실외기실의 크기, 형태(독립형, 오픈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장비배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본 공사 시 실외기실 도어 크기 및 개폐방향은 사이버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에 따라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사이버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시공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내·외부의 기온차에 의해서 내부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오니 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창호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된 모든 창호(난간 포함)의 형태, 재질, 색상과 하부턱 높이, 난간대 설치 여부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의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 창은 미관 개선 및 성능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무상 및 유상 옵션

- 세대 옵션(무상/유상)관련 사항은 분양 계약 시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 옵션 관련 행사를 통하여, 입주자가 원하는 옵션품목을 선택 및 시공할 수 있으며 행사 기간 이후에는 별도 무상교체 선택 및 마감재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 유상옵션 행사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진행되며, 행사 기간 이후에는 별도선택 및 취소를 하지 못합니다.

■ 기타사항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아파트는 2020년 02월 최초 건축심의접수(2020년 03월 완료), 2021년 06월 최초 사업시행인가접수(2021년 08월 완료)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가능한 법적기준 (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는 주변인들에게 상시개방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계약자 및 입주자는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홍보물 (모형, 카달로그, 각종 광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홍보에 사용된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CG(조감도, 배지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입체도, 단위세대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일반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1월 예정(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고단열 고기밀 강제창호	적용	외기에 간접면하는 세대 현관문은 열관류율이 $1.8\text{W/m}^2\text{K}$ 이하이고, 기밀성능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4\text{W/m}^2\text{K}$ 이하.	
창의 기밀성능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의 단열재의 설치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 설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함.
	고효율 급수펌프 (마목)	적용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함.
	절수형 설비 설치 (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함.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 설비 설치함.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함.
	조명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함.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를 설치함.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함.

■ 감리 회사 및 감리 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토목/설비	전기/소방/통신
회사명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주)	한빛디엔에스(주)
감리금액	569,269,429원	250,000,000원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자	공동 시행사	시공사
상호	부천여월엘에이치참여형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	이수건설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부천시 성곡로28번길 7, 비1호(여월동, 정우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14층(동자동, KDB생명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반포동)
사업자등록번호	676-88-01196	106-82-16470	206-81-40254

■ 분양 홈페이지 : <https://brownstone-yeowol.com>

■ 주택홍보관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88 구로 SKV1센터 A207호

■ 분양문의 : 1666-6335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홍보관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